

## 『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,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□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를 추가하고,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